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235 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박덕흠 · 박성민

조지연 · 강명구 · 박정하

정동만 · 김 건 · 이만희

윤한홍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 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, 평시에는 산림보호, 벌채,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

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임도의 확대 및 관리) ①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 군수·구청장은 산림의 효율적 경영·관리와 산불예방을 위하여 임 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임도의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임도의 확대 및 관리)
	① 산림청장, 시·도지사 또는
	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산림의
	<u>효율적 경영·관리와 산불예방</u>
	을 위하여 임도 확대 및 관리
	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임
	도의 설치 확대 및 체계적 관
	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	③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와 관
	런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
	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
	하여야 한다.